

2026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5. 7.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5. 11.(월) ~ 2026. 11. 6.(금)

- 인터넷: 접수 마감일 홈페이지 신청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인분까지 인정

나. 사업규모 : 약400대 / 1,001백만원

※ 단, 사업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라. 대상선정 : 접수기간 동안 접수순으로 선정

2 대상선정

가. 선정방식

- 접수기간 동안 접수순으로 선정

※ 접수순으로 선정되나, 동일 날짜에 예산 초과 접수되어 마감된 경우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될 수 있음

나. 선정통보

- 신청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 통보 예정

3 지원대상

※ 아래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의무운행기간 2년이 경과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공동명의 소유자 포함)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후 납부증명 서류 제출해야 함**

4 지원금액

※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의 합이 아래표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기본과 추가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착불가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5)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총중량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총중량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총중량 33톤 이상	7,900		
지게차	총중량 9톤 미만	1,050		
	총중량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총중량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상세 기준】

①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 11. 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②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를 폐차한 경우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 11. 1. 이후 신규로 등록(단,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 구매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 (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 10. 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 11. 1. 이후 신규 등록(단, 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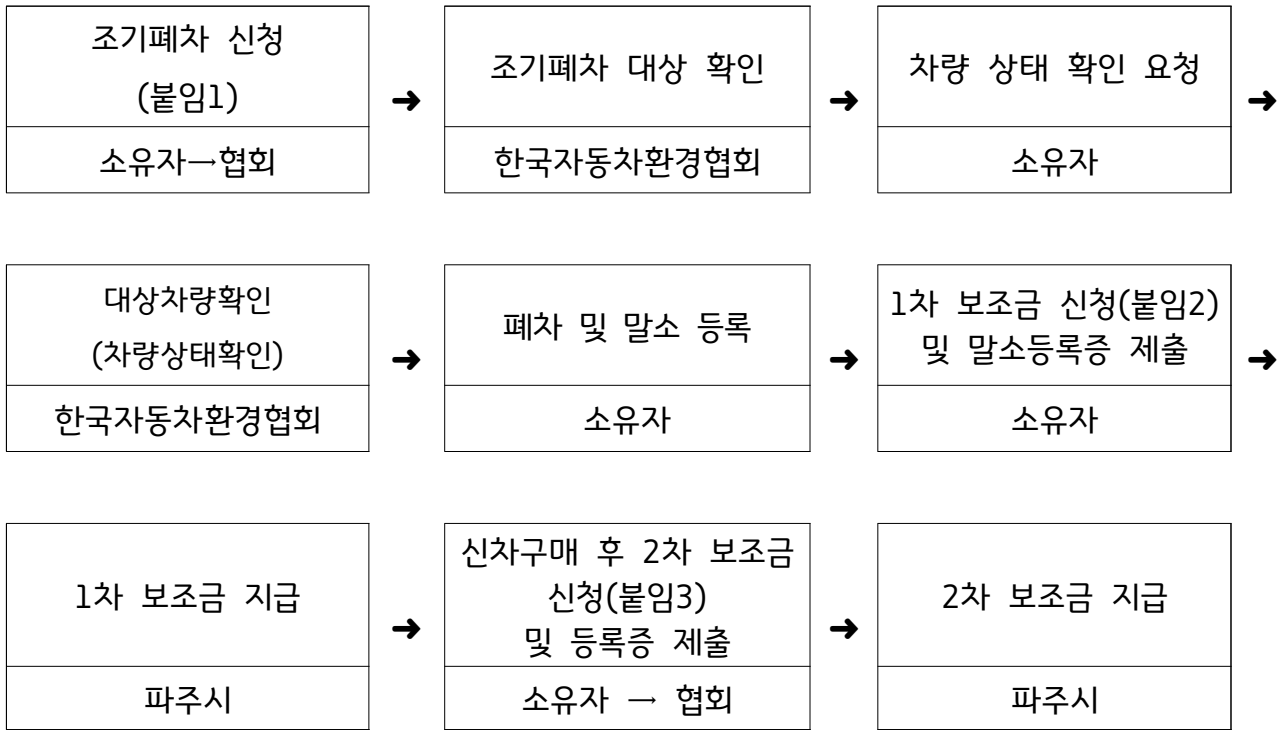
③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폐기한 경우

-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를 '25. 11. 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 출력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가능

5 진행절차



가.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1) 사업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시** 보조금 지원

※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2) 신청방법 : ① ~ ② 중 선택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시 신청 불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해당할 경우)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등 추가보조금 증빙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 추가보조금 증빙서류를 청구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되지않음

②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접수 인정, **공고 시행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3)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검사

- ※ 온라인 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 받을 경우, 지원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

4) 청구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2)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말소사실증명서 1부)
 - 소유자(보조사업자,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포함)의 통장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연장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함

나. 조기폐차 후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1) 사업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 ※ **조기폐차 차량 소유자와 신차 구매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건설기계 포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2) 청구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붙임3)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소유자(보조사업자,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포함)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연장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함

- ※ 2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 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6 유의사항(필독)

-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및 파주시 결정에 따름
-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 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검사 시 비수도권 폐차 가능**
- 라. 1차 보조금(1차 보조금 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및 보조금 지급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 반복할 수 없음
- 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대상확인검사 - 정상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할 필요가 있음
 -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바.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https://www.mecar.or.kr>
-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것
- 아.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

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자.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차. 종합(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카.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동 법 제40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타.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5등급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4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7 문의처

- 조기폐차 접수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지급 문의 :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 ☎031-940-3793

[붙임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 - _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담당자 앞(우편번호 : 14055)

[붙임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원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반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담당자 앞(우편번호 : 14055)

[붙임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 규격(건설기계)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같음) 3.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붙임4]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입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입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참고]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